#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93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용태·이종배·서천호

유용원 • 박덕흠 • 조은희

이성권 · 강대식 · 임이자

서명옥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 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,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학교 주변 순 찰·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,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또한,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 제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,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8).

법률 제 호

## 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8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 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, "학생의 안전대책"을 "학생의 안전대 책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"으로 한다.

- ③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는 시설(이하 "통합관제센터"라 한다)을 직접설치·운영하거나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8(학생의 안전대책 등)	제30조의8(학생의 안전대책 등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
	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
	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는
	시설(이하 "통합관제센터"라 한
	<u>다)을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,</u>
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	제74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처
	리기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
	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
	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다. 이
	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
	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
	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
	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
	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
	2항 및 제3항 따른 학생의 안
	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・재
	<u>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 에 따른 <u>학</u>	<u>⑤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
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	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합관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	제센터의 설치·운영